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拒 絕 査 定

<大法院 第3部 判決>(1982. 1. 26)

裁 判 長: 大法院判事 정 태 균
關與法官: 〃 김 종 서, 윤 일 영, 김 덕 주
1. **被審判請求人**(上告人): 캘리포니아 앨머드 그로워즈엑스체인지(美國 캘리포니아주 새크맨토시 제18C
2. **審判請求人**(被上告人): 特許廳長
3. **原審決**: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1.5,30字, 1979年 抗告審判(절) 第926號 審決
4.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이 確定한 事實에 의하면 審判請求人이 出願한 商標(以下 本件 商標라 한다)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아몬드型圖形內에 흰색으로 BLUE DIAMOND라고 英文字로 2단 횡서한 圖形과 文字의 結合商標이고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以下 引用商標라고 한다)는 마름모속에 DIAMOND라고 英文字로 횡서한 圖形과 文字의 結合商標이며 위 두 商標의 指定商品은 同一하다는 것인 바 위 두 商標를 正確하게 살펴보면 그 稱號上에서 볼 때 서로 識別할 수 있어 이를 類似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위 두 商標는 그 構成에 있어서 마름모꼴과 DIAMOND라는 文字가 가장 重要한 部分을 이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商標는 引用商標에 BLUE라는 形容詞的 文字를 結合한 것에 不過하여 위 두 商標는 全體的으로 볼 때 그 外形, 觀念에 있어 類似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趣旨에서 위 두 商標를 類似하다고 判示한 原審決은 正當하고 原審決의 論旨가 攻擊하는 것처럼 商標의 稱號를 여러개의 構成部分으로 나누어서 부를 수 있는 것같이 判斷하였다 하더라도 本件의 두 商標가 거기에 使用된 圖形, 文字등 全體를 基準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차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는 結論에는 영향이 없으며 論旨가 말하는 判決들은 모두 本件에 適切한 것이 못되고 原審決의 所論과 같이 理由不備, 經驗則, 採證法則違背나 商標法上의 類似商標에 관한 法理誤解 및 審理未盡의 違法이 있다할 수 없다. 論旨는 모두 理由없다.

따라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參 考—

抗告審判

1979年 抗告審判(당) 第926號

抗告審判請求人: 캘리포니아 앨먼드 그로워즈엑스체인지

被抗告審判請求人: 특허청장

主文: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